

#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1438
------------	------

2016년 12월 19일  
교 육 위 원 회

## I 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년 10월 31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2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03일
3. 상정일자

○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

(2016년 12월 19일 상정·원안가결)

## II 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신문규)

### 1. 제안이유

○ 현행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가운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일부 조례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, 신뢰성 등을 높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입법기술상 효율적인 방식인 일괄정비 형식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○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(안 제1조 외)

- 「정부조직법」 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개정 등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및 본청 부서명칭 변경(안 제1조 외).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법령 및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2조 외).
-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(안 제5조 외).
-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19조 외).
- 기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일부학교의 주소체계를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(안 제24조).

#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38호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0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, 「정부조직법」 등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다수의 교육청 조례에 반영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.

#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# 가. 주요 정비사항에 대한 검토

- 동 조례안은 총 34개 조문으로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」 등 교육청의 교육·학예에 관한 34개의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기술상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- 주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를 비롯하여 제3조, 제4조, 제5조 등

19개 조문은 ‘지역교육청’ 또는 ‘하급교육청’ 등을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‘교육지원청’으로 개정하는 것이고,<sup>1)</sup>

안 제3조, 제14조, 제17조, 제31조 등은 「정부조직법」, 「지방회계법」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「예산회계법」, 「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 관한규칙」 폐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
○ 그 외 동 조례안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법령 및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였는바,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법적 통일성 및 체계적합성 확보의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**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V. 토론요지 : 없음.**

**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**

**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**

**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**

**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**

---

1) ‘지역교육청’이라는 용어는 2013년 12월 30일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 개정으로 ‘교육지원청’으로 명칭이 바뀌었음.

##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공보담당관”을 “대변인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초중등교육법」”을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·지역교육청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·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공무원직장협회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」”을 “「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」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」”을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”을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으로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「예산회계법」·「물품관리법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 중 “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”을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4조의2제5항 중 “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”을 “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명칭란 중 “7 서울강서교육발전자문위원회, 8 서울강남교육발전자문위원회, 11 서울성북교육발전자문위원회”를 “7 서울강서양천교육발전자문위원회, 8 서울강남서초교육발전자문위원회, 11 서울성북강북교육발전자문위원회”로, 해당 교육지원청란 중 “7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, 8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, 11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”을 “7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, 8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, 11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0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1호 중 “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, 같은 조 제33호 중 “학교시설사업 촉진법”을 “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”으로 한다.

제12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8조제2항”을 “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

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다목 중 “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”을 “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교육과학기술부”를 “교육부”로 한다.

제15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16조(「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17조(「서울특별시 초등학교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초등학교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」 제8조제1항의 규정”을 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 제17조”로 한다.

제18조(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5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44조제2항제6호 중 “교육과학기술부”를 “교육부”로 한다.

제47조제2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19조(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지방계약직공무원”을 “지방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0조(「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, 같은 항 제2호 중 “「국가보훈기본법」”를 “「국가보훈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21조(「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단서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22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23조(「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4조(「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하계동 78”을 “공릉로 264 (하계동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2. 서울공업고등학교[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46 (대방동)]

제25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『서울특별시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』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6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호 중 “체육건강청소년과장”을 “체육건강과장”으로 한다.

제27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28조(「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 한다.

제29조(「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하급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30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

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자치부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자치부”로 한다.

제31조(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”을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”을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2항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제32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자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, 발주기관명란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33조(「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”을 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34조(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학교시설사업촉진법」”을 “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